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3
----------	---------

발의연월일 : 2021. 2. .

발 의 자 : 최동철, 김성한, 송순효, 이의걸
김현희, 정정희, 이종숙, 신낙형
김선경, 이충숙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보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기본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4조)
- 라.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시행규칙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나. 협조부서 : 교통행정과
- 다. 입법예고 : 2021. 2. 19. ~ 2. 2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분야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횡단보

도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7.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

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 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운영체계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통행방법 개선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